

의안번호	2200606
의 퇴 인	권영세의원
회 답 일	2024. 07. 11.
추 계 번호	24D096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4억 1,100만원, 2026년 94억 1,1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88억 2,200만원(연평균 37억 6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(안 제157조제3항)	9,411	9,411	—	—	—	18,822	3,764

주: 1. 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(안 제157조제3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2025년부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총 57,036대를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7조제3항 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	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58조제3항 (사전투표)	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76조제1항 및 제2항(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후단 신설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당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함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회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합·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57조제3항 (투표용지수량 및 기표절차)	0	
2	안 제158조제3항(사전투표)	—	안 제157조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 당일 투표 때 사용하는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장비를 사전투표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
3	안 제176조제1항 및 제2항(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후단 신설	—	현행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서 우편투표함 접수와 사전투표함 인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‘신분증 스캐너’를 사용하여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 스캐너는 2년에 걸쳐 구매 완료하여 추계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

○ 유사사례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 기능을 갖춘 신분증 스캐너 구매 입찰공고(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)를 활용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4 기준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 (CPI)	3.6	2.6	2.2	2.2	2.1	2.1	2.1

(단위: %)
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 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총 57,036대의 신분증 스캐너를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 투표소 수는 14,259개소이고 신분증 스캐너와 유사한 장치로 명부단말기 등이 투표소 1개소 당 4대씩 배치
 -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사용할 신분증 스캐너도 투표소 1개소 당 4대로 가정하면 총 57,036대(=14,259개소×4대)
 - 조달청의 나라장터 검색결과, 신분증 스캐너 1대당 단가는 2022년 기준 30만원²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4억 1,100만원, 2026년 94억 1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88억 2,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투표관리관의 신분증 스캐너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신분증 스캐너 수량(A, 대)	28,518	28,518	—	—	—	57,036
1대당 단가(B, 만원)	33	33	—	—	—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9,411	9,411	—	—	—	18,822

2) 2022년 ‘기업은행 노후 업무용 스캐너 교체(신분증 스캐너)’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, 300개 구입에 8,903만원(부가세 10% 포함)으로 신분증 스캐너 1대당 가격은 30만원으로 추정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투표관리관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여 선거인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